민족고전문헌 《천일록》에 반영된 조선봉건왕조의 지방관료기구와 관련한 몇가지 자료분석

리 희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에는 인민을 억압하는 소수 통치배들이 인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로부터 강제로 정권을 만들었기때문에 그것은 항상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정권이였습니다.》 (《김일정전집》제4권 375폐지)

지난날 봉건사회의 정권은 인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왕을 비롯한 소수 통치배들이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것으로서 극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 하는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독재정권이였다.

14세기말 국가정권을 탈취한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봉건 적통치체제를 저들의 리익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압 박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민족고전문헌《천일록》에는 지배계급의 목적과 리익에 맞게 편성된 관료기구들의 일 면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

민족고전문헌《천일록》은 관료기구와 관직제도를 비롯한 관제를 전문으로 다루고있는 법전형식의 책이 아니라 조선봉건왕조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류서형식의 문헌이다. 그러므로 《천일록》에서는 《경국대전》이나 그 이후에 편찬된 법전들에서처럼 관료기구들에 대하여 해당 관청의 사회적기능과 기구의 등급에 따라 서술한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관청의 연혁을 소개하면서 그것들이 왕권강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위주로 개괄하였다.

《천일록》의 《치관》, 《각도총록》편목에는 18세기말-19세기초 조선봉건왕조의 지방관료기구에 대한 자료들이 수록되여있다.

민족고전문헌 《천일록》에 반영된 조선봉건왕조의 지방관료기구와 관련한 자료에는 무엇보다먼저 도관찰사파견과 관련한 몇가지 특징을 찾아볼수 있게 하는 자료가서술되여있다.

조선봉건왕조정부는 매 도마다 관찰사(일명 방백, 도백, 도신, 감사라고도 함)를 한명 씩 파견하였다.

《천일록》의 《건도》편목에서는 《관찰사》라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고 관찰사의 임무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에 의하면 관찰사는 매개 도의 우두머리벼슬로서 주로 도안의행정, 군정, 재정 및 사법, 형벌관계 등 온갖 일을 담당하며 또한 국왕과 봉건정부의 명령을 고을에 되받아넘기고 각 고을 관리들의 사무행정을 감독통제하는 직능을 가지였다.

따라서 봉건정부는 관찰사에게 해당 도내 각 고을을 다 소속시켰으며 모든 사무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웠다. 그런것으로 하여 관찰사는 주로 관내 고을들을 순시하는것을 중요한 임무로 하였다.

18세기말-19세기초 전국에 파견된 관찰사들의 품계를 보면 평안도와 함경도는 종2 품이상(부윤을 겸임), 경기도는 종2품이상(4도류수 겸임),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등은 정3품이상(목사 겸임). 전라도는 정3품이상으로서 전주부윤을 겸임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조선봉건왕조정부의 관찰사파견에서는 몇가지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우선 경기도, 평안도, 함경도에 파견되는 관찰사의 품계는 종2품이상으로, 나머지는 모두 정3품으로 되여있는것이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이 전국적으로 경기도, 평안도, 함경도를 특별히 중시하 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봉건왕조가 경기도, 평안도, 함경도를 중시한것은 이 도들이 차지하고있는 위치 와 관련되여있었다고 볼수 있다.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은 전국을 통제하기 위한 선차적사업으로 당시 봉건국가의 수도가 자리잡고있던 경기도를 장악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통치질서를 강화하고 그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한급높은 품계를 가진 관리를 관찰사로 임명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당시 나라의 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고 봉건정부의 차별정책으로 하여 반정부기운이 제일 강한 지역으로 지목되여있었으며 특히 함경도는 조선봉건왕조 태조왕의 조상의 릉묘를 비롯하여 봉건국가가 특별히 관심하는 고을이 있었으므로 이곳의 관찰사도다른 도보다 한등급 높게 하였다고 볼수 있다. 관찰사들은 자기가 주재하는 고을행정기구의 장관직을 겸하고있었다.

조선봉건왕조가 겸직제도를 실시하게 된것은 중앙과 지방의 관료기구를 부단히 정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극소수 통치배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중앙집권력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나 측근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았기때문이라고 할수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관료기구를 재정비하면서 많은 인원이 요구되였던 사정과도 관련되며 과도한 관료집단에 대한 방대한 재정적지출을 극력 줄이고 관료들의 업무도수를 높이는데서 효과적이라고 보았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이로부터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에게 이미 맡은 직무외에 한개 또는 두개 지어는 세개이상의 관직을 담당하도록 하는 겸직제도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민족고전문헌 《천일록》에 반영된 조선봉건왕조의 지방관료기구와 관련한 자료에는 다음으로 고을의 급수와 관련한 자료들이 서술되여있다.

《천일록》의 《각도총록》편목에는 지방행정기구직제에 따르는 각이한 명칭을 가진 고을들이 일정한 순위에 따라 기록되여있다. 여기에서는 전국적으로 333개에 달하는 고을들을 각 도별로 소개하면서 고을명칭의 뒤에 류수, 윤, 판, 부, 목, 군, 령, 감이라는 글자를 덧붙여서 해당 도안에서 그 고을이 차지하는 급수를 밝히고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고을이름뒤에 붙어있는 《판》과 《부》이다.

우선 《각도총록》에는 《판》자가 덧붙어있는 고을이 6개로서 곧 함흥판, 원주판, 공주판, 해주판, 대구판, 전주판 등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여있다.

《천일록》에 기록되여있는 자료들을 보면 우에서 제시한 고을들은 다 해당 도의 감영이 자리잡고있는 도행정중심지들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즉 함흥에는 함경도감사가 있는 함흥감영, 해주에는 황해도감사가 있는 해주감영, 원주에는 강원도감사가 있는 원주감영, 공주에는 충청도감사가 있는 공주감영, 대구에는 경상도감사가 있는 대구감영, 전주에는 전라도감사가 있는 전주감영이 있었다.

그런데 동일하게 《판》으로 되여있는 고을이지만 고을의 급수와 관리들의 품계에서는 차이가 있다. 고을의 급수와 관리들의 품계를 보면 함흥판, 전주판은 종2품 부윤, 해주판, 원주판, 공주판은 정3품 목사로 되여있고 대구판은 종3품 부사이다. 다같이 《판》자가 붙어있는데도 해당 고을에 파견된 관료들의 품계에서는 차이가 있는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고을의 이름뒤에 덧붙은 《판》은 지방통치체계에 따르는 관료기구명칭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판》은 도관찰사가 주재하고있는 고을을지목하여 이르는 말이며 《판》은 관찰사가 해당 도내의 일을 주관한다는 의미로 리해할수 있다.

또한 《각도총록》에는 조선봉건왕조의 후기 법전인 《대전회통》의 기록과는 다르게 대도호부를 5개가 아니라 7개로 볼수 있는 자료가 수록되여있다.

《천일록》에는 녕변, 영흥(금야), 강릉, 옹진, 경주, 안동, 창원이 지방의 특수행정단위로서 《부》로 표시되여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당시 대도호부는 조선봉건왕조통치시기 비교적 큰 고을에 두었던 지방의 특수단위로서 처음에는 녕변, 안변, 강릉, 안동 네곳에 두었고 후기에는 녕변, 영흥(금야), 강릉, 안동, 창원 등 다섯곳에 두었다고 한다. 즉 《대전회통》과 대비적으로 《천일록》에는 옹진과 경주가 더 포함되여있다.

옹진과 경주를 대도호부로 보게 되는것은 우선 《천일록》의 편찬자가 옹진과 경주를 《대전회통》에서 대도호부라고 한 고을들과 나란히 두드러지게 기록해놓은 사실이다.

《천일록》에서 옹진과 경주는 녕변, 강릉, 영흥(금야), 안동, 창원 등 5개 고을들과 나란히 같은 반렬에 《부》로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옹진과 경주 역시 《대전회통》에 밝혀져있는 대도호부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은 고을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옹진과 경주를 대도호부로 보게 되는것은 또한 옹진과 경주가 당시 해당 도들에서 비교적 큰 고을들이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었던것과도 관련된다.

원래 도호부, 대도호부의 설치는 고려시기부터이다.

도호부는 11세기초(현종왕 1010-1031)에 지방에 둔 관료기구의 하나로서 대도호부의 아래이며 군보다는 높은 급으로서 처음에는 전국에 5개의 도호부를 두었다가 1018년(현종왕 9년)에 4개의 도호부를 두었고 1375년(우왕 1년)에는 군대통솔권까지 부여하였다.

대도호부는 고려시기에 비교적 큰 고을에 두었던 지방의 통치단위로서 전국에 4개의 대도호부를 설치하였는데 때에 따라 위치가 조금씩 바뀌우기는 하였지만 대체로는 해주 에 안서대도호부, 전주에 안남대도호부, 경주 또는 상주에 안동대도호부, 강릉에 대도호 부를 두었다.

이밖에 중도호부를 설치하고 문종왕시기 사 1명(4품이상), 부사 1명(5품이상), 판관 겸 장서기 1명(6품이상), 법조 1명(8품이상)을 두었다가 후에 사사록 혹은 사법조를 두고 기구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도호부, 중도호부, 대도호부는 비교적 큰 고을로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들에 설치하였다.

조선봉건왕조 역시 도호부, 대도호부설치와 관련하여 전례를 따랐다고 볼수 있다.

《천일록》의 《각도총록》편목에 의하면 옹진에는 황해도수영이 있고 우후가 항시적으로 주재하는 해안방어의 요충지로 되여있었다고 한다. 《대전회통》에도 옹진수영은 황해도수군절도사가 겸한다고 기록되여있다.

경주 역시 도내에서 종2품의 부윤이 있는 가장 큰 고을이고 또 후영장이 항시적으로 주재하고있는 군사적으로 중시되는 고을이였다. 경주 역시 도내에서 종2품의 부윤이 있는 가장 큰 고을이고 또 후영장이 항시적으로 주재하고있는 군사적으로 중시되는 고을이였다.

물론 《천일록》의 기록에서 대도호부, 도호부라고 찍어서 밝히지 않고 다만 《부》라고 하고 거기에 녕변, 안동, 옹진 등 7개 고을을 별도로 기록하였으므로 대도호부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73개의 도호부와 구별하여 《부》 라고 기록하고있는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봉건왕조정부가 녕변, 영흥(금야), 강릉, 안 동, 창원과 함께 옹진과 경주를 특별부로 정하고 직속 관할하였다고 볼수 있다.

민족고전문헌 《천일록》에 반영된 조선봉건왕조의 지방관료기구와 관련한 자료에는 다음으로 지방관료기구의 말단단위의 하나인 면에 대한 자료가 서술되여있다.

당시 조선봉건왕조의 지방관료기구체계를 보면 각 고을밑에는 행정단위로서 면들이 조직되여있었다. 면에는 해당 지역의 사람들로써 《풍헌》, 《약정》, 《권농》 등 면임(일명 면 장)들을 두고 그들을 통하여 봉건적통치질서를 유지하였으며 그들을 조세와 부역을 독촉 하는 하수인으로 삼았다.

《천일록》에 올라있는 각 도별 면의 분포정형을 보면 평안도는 42개 고을에 면이 434개, 함경도는 23개 고을에 면이 218개, 강원도는 26개 고을에 면이 222개, 황해도는 23개 고을에 면이 298개, 경기도는 34개 고을에 면이 390개, 충청도는 54개 고을에 면이 561개, 경상도는 71개 고을에 면이 924개, 전라도는 51개 고을에 면이 721개로서 모두 324개 고을에 면이 3 768개가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매 고을에 평균 11~12개의 면이 있는것으로 된다. 일부 고을에는 30~42여개의 면이 기록되여있다. 대표적으로 해주와 남원을 들수 있는데 해주에 35개, 남원에 48개의 면이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에 면이 비교적 조밀하게 조직되여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시 면분포를 통하여 경기이남지역에는 면이 많이 배치되여있었지만 경기이북지역 에는 비교적 적게 분포되여있었으며 큰 고을에는 밀집되여있었지만 작은 고을과 산간지 역 고을들에는 매우 드물게 분포되여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당시 봉건국가가 지 방통치에서 중요시하고있는 고을들과 사람이 모여들고 물산이 집중되는 수탈중심지들에 면을 많이 두고 인민들에 대한 장악통제를 강화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면아래에 동, 리, 통호가 있었지만 면은 조선봉건왕조전기간 지방관료기구의 말단단 위로서 봉건적통치질서를 유지공고화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면에 대한 자료는 18세기말-19세기초 조선봉건왕조의 지방통치체계의 말단단위로서의 기능과 역할, 전국적인 범위에서 면의 개수와 매 고을별로 되는 면의 수자를 밝혀주고 있는것으로 하여 일정하게 사료적가치가 있다.

《천일록》에 반영되여있는 지방관료기구와 관련된 자료는 당시 조선봉건왕조의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데서와 관제사연구에 참고로 된다.

조선봉건왕조는 지방의 통치체제를 확립한데 기초하여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으며 인민들을 봉건적인 통치질서에 더욱 철저히 얽어매고 그들의 반봉건투쟁을 사전에 내탐하여 아래단계에서 꺾어버릴수 있게 련대적인 책임제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관료기구는 조선봉건왕조전기간 봉건국가의 통치질서를 유지하고 수 탈을 위한 도구로,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복무하였다.